

23년도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 추가공모계획안

□ 추진경과

- 사회적경제 기반이 열악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 인적역량 강화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가 66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옴
- 3년 계속 사업('22-'24년)이나 일부 지역에서 '23년 사업에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 공모 필요

□ 추가 공모 내용

- (지원대상) '22년 사업 진행 대상 지역 중 인력 추가를 원하는 시·군 또는 그 외 지역 중 2년 간 사업 진행에 동의하는 시·군
- (지원내용) 사회적경제 관련 기획·홍보·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활동가)의 체류비, 활동비를 지원
 - * 주거비, 사회적경제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비, 재료비, 홍보비 등 활동가 1인 기준 월 200만원
- (추가공모예산) 180백만원(국비 80%, 지방비 20%)
 - * 시·군(1~2개소)당 5~10명 이내의 활동가 체류비 지원
 - ** 1,125백만원 = 2백만원 × 9개월 × 62.5명(국비 80%, 지방비 20%)

□ 추진일정

- 사업공모 실시(농식품부 → 지자체) : '22. 11. 11 ~ 30
- 사업신청(지자체 → 농식품부) : '22. 11. 30일까지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선정(농식품부) : '22. 12월
- 사업비 지원 : '23. 4 ~ '24. 12(2년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과장 박은엽 사무관 문지영	044-201-1571 044-201-1572
농업농촌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부장 이금미 차장 이혜경	031-8084-9564 031-8084-9574

I. 개 요

1. 배경 및 목적

- 농촌 지역 밀착·수요맞춤형 사회적경제모델 발굴 및 혁신성장 기반 마련, 농촌 지역의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 사회적경제 기반이 열악한 읍·면 마을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외부 인적자원 유입 촉진 및 공동체 조직화,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인큐베이팅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II.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 지원대상 : 시·군
 - 직접운영형 : 지자체에서 활동인력(활동가)을 직접 공모·선정하여 사업 추진
 - 조직연계형 : 관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단체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읍·면 지역에 실거주하면서 사회적경제 서비스 수요 발굴, 지역공동체 조직화, 창업·취업 연계 지원 등 사회적경제 관련 기획·지원·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이하 ‘활동가’라고 함)의 체류비, 활동비 등 지원
 - * 별도 제경비(4대 보험료와 퇴직금)와 사업운영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근로자로서의 지위 (최저임금 등)는 지자체장 또는 조직연계형 사업자가 보장 가능
 - 주거비 :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월세 등 주택 임차 비용과 주택에 따르는 공과금(전기료·상하수도료 등)

- 활동비 :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조직화 등 읍·면 마을단위 사회적경제 서비스를 발굴·기획·개발하거나 사회적경제 서비스 우수사례 견학 비용 등
- 재료비 :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기반 조성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소모성)
- 회의비(다과, 식대 포함) :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회의 및 소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장소 임차료, 다과비 등)
 - *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활동과 관계없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교통비 : 사회적경제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이동 비용
- 홍보비 :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한 홍보 비용 등
- 기타 : 사회적경제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경영 컨설팅 비용,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활동 사업계획 컨설팅 등 관련 비용 등

3. 지원형태 및 규모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1~2개 시·군 내외(시·군당 지원 활동가 최소 5명 ~ 최대 10명으로 구성)
- 지원형태 : 보조(국비 80%, 지방비 20%)
- 지원한도 : 농촌 사회적경제 활동가 1인당 월 200만원 수준의 체류비·활동비
(20%이하의 범위내에서 회의비,홍보비,기타비용 별도 사용가능)
- 지원기간 : 사업대상 선정후 2024년 12월까지 2년간('23년은 4월부터 지원 예정 / 매년 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조정 가능)
- ※ 정부 또는 지자체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지원제한, 지자체 직접지원형은 표준근로계약서 참고 등 자체적으로 실시

4. 활동가 자격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50세 이하
- 자격 :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활동에 역량과 의지를 가진 자
- 업무 : 읍·면 단위에 실거주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취업, 지역공동체 조직화, 서비스 수요 발굴 등 사회적경제 관련 기획·지원·홍보 활동 수행
- 거주 : 지원기간 동안 해당 읍·면에 체류하여야 함
 - 대상 지역은 시·군의 읍·면 단위로 제한(동 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
 - * 읍·면 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라 고시한 지역(생산·녹지보전지역, 생산·녹지관리지역, 농림·환경 보전지역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이하 같음)

- 기타 : 선발시 지자체장 등이 요건 추가 가능

5. 활동내용

- (주요활동) 농촌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서비스 수요 발굴, 외부 인적자원 유입 촉진 및 공동체 조직화,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인큐베이팅 활동 수행, 사례관리 및 홍보 등
- 세부활동내용 예시는 아래와 같음
 - (농촌 서비스공동체 조직화) 농촌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 개인 서비스 공급자 등을 공동체로 조직화
 -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구체적인 사회적경제 모델 창출 및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
 -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인큐베이팅) 지역수요에 적합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수익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등 지원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자립형 사회적 공동체 발굴 및 육성) 단순 주민참여형 공동체보다 주민 자립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방식의 일자리, 서비스 등 지속가능성 확보, 지속 가능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필요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및 교육·컨설팅) 지역 주민에 대한 역량강화 및 조직화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내 돌봄 등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실시
 - (홍보)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실시, 홍보 활성화로 마을·면 이미지 제고

III. 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종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23년도

사업 공모(11월중)

- 사업을 희망하는 시·군 지자체는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11.25.)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1.30.)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식품부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사전에 확정하고,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해 5명 내·외로 구성
 - *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와 사업자 간 조율에 따라 사업 계획이 일부 수정되거나 지원 금액이 계획서보다 감액될 수 있음
 - ** 대상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인 경우 선정 평가시 우대
- 지원 대상이 선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결과를 시·도에 알리고, 시·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3.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별 자금 배정('23.4.)
- 시·도는 배정 자금을 시·군에 재배정하고, 시·군은 사업 대상자별로 최종 지급액 확정('23.4.)

4. 이행점검단계

- 시·군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포함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 사업비 집행 현황,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5. 사후관리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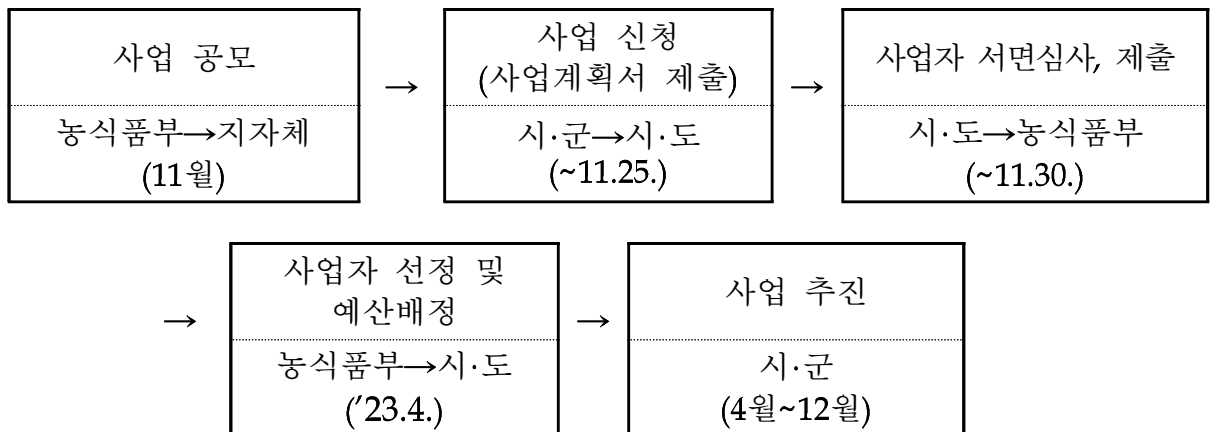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군의 사업 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에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대상자(농촌 사회적경제 활동가)는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 조성 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익년도 1월 중순)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자의 결과보고서와 시·군의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별지 제5호 서식)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익년도 1월 말까지)

7.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자 : 시·군
- 사업추진절차



[별지 제1호 서식]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사업 신청서

신청 지자체	지자체명 (광역)		지자체명 (기초)		담당과	
	담당자명		담당전화		이메일	
신청 내역	신청유형	☐ 직접운영형 ☐ 조직연계형(해당되는 곳 √ 표시)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80%)		시·군(20%)	
	주요활동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및 공동체 활동 내용 등				
	신청인원	<u>00</u> 명				
		연계조직명 :				
우대사항 (인구감소지역)	☐ 해당 / ☐ 해당없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에 있어 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오류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해 적용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시·군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 계획서 2. 사업계획서 상 주요 증빙자료(자율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 계획서

1. 사회적경제 활동 개요

가. 사회적경제 주요사업 실적

(예시)

- □□□□사업(○○○부)(’00년) : (주요 사업 내용 작성)
- □□□□사업(○○○부)(’00년) : (주요 사업 내용 작성)
- □□□□사업(○○○부)(’00년) : (주요 사업 내용 작성)

나.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의 필요성

(예시)

- 지역 사회적경제 현황
-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필요성

2.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 계획

가. 연계기관 현황(조직연계형)

업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			자본금	백만원
	(전화번호)			(E-mail)	
설립일자		(조합원 등) 구성원수	명	상시 고용인원 ※현재기준	구성 현황
조직 형태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나. 사업목표

		내 용	비고
비전 및 목표		* 아래에 작성한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 (예시) 사회적경제조직 00개 신규창업, 사회적경제 관련 일자리 00개 창출, 서비스 공동체 조직 00개소 육성 등 구체적 목표 제시	
사업 목표	1년차	- ○○면 지역 서비스공동체 구축 및 장애인·고령자 대상 생활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주2회) - ○○면 취약계층 방문 및 서비스 제공(월1회, 3월~10월)	‘22년

	2년차	- 000 대상 일자리 창출 컨설팅(2회), 사회적경제 관련 창업 및 취업 지원 활동, 활동가 1명 신규 고용 -	'23년
	3년차	- 사회적경제조직 판로 개척, 마케팅 및 홍보활동 실시(00업체) -	'24년

* 사업 내용은 연차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나, 연차별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합쳐서 작성도 가능

다. '23년도 사업 세부계획

* 사회적경제 활동가 채용 및 관리 계획을 포함한 세부 사업계획

(예시1) 시·군에서 직접 활동가를 채용하여 사업 추진할 경우

☐ 활동가의 역량강화, 네트워크 등 선발·관리 계획

- 선발 계획(선발 일정, 인원 등)
- 주요 활동내용

☐ 사회적경제 활동가를 활용한 세부사업 계획

-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다양한 지역형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 ..
- (상세 내용 작성) 000활동(3월~5월), 월 2회,
-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인큐베이팅) 지역수요에 적합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수익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 등 지원
- (상세 내용 작성) ...000활동(3월~5월), 월 2회,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
- (상세 내용 작성) 000활동(3월~5월), 월 2회,
- (주민자립형 사회적 공동체 발굴 및 육성) 단순 주민참여형 공동체보다 주민자립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방식의 일자리, 서비스 등 지속가능성 확보, 지속 가능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필요서비스 제공
- (상세 내용 작성) 000활동(3월~5월), 월 2회,
- (사례관리 및 교육·컨설팅) 지역 주민에 대한 역량강화 및 조직화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내 돌봄 등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실시
- (상세 내용 작성) 000활동(3월~5월), 월 2회,
- (홍보)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실시, 홍보 활성화로 마을·면 이미지 제고
- (상세 내용 작성) 000활동(3월~5월), 월 2회,

☐ 소요예산

- 예산내역

(예시2)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계획 : 관내 사회적경제중간지원 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선정하여 사업추진할 경우

- ☐ 연계기관 개요
 - 연계기관 소개(주요활동 실적)
- ☐ 세부사업 내용
 - 활동가 선정계획
 - 활동내용(사업내용)
- ☐ 연계기관 관리계획
 - 이행점검계획
- ☐ 소요예산

3. 활동가 선발·역량강화 등 관리계획

- ☐ 활동가 선발 계획
 - 선발기준
 - 선발일정
- ☐ 교육·컨설팅 등 역량강화 계획
 - 워크숍 및 설명회
 - 지역내 사회적경제중간기관 간담회
- ☐ 주거 등 기타 지원계획
 - 지역사회 사업

4. 예산 집행 계획

구 분	항 목	지출 금액 (천원)	비 고
체류비	주거비	15,000	300천원*10월*5인
		...	
	소 계		
활동비	재료비	6,500	재료비 50천원*26회*5개 마을
	지역 서비스 수요발굴 회의비	1,000	다과비 등 100천원*10회
	창업지원 워크숍·포럼	1,500	워크숍 500천원*3회
	우수사례 견학	1,000	견학 200천원*1회*5인
	소 계		
	교통비	...	
	홍보비	...	
	소 계	10,000	
합 계		100,000	활동가 5인 기준 산정

'23년도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 점검결과 보고서 (시·군명)

1. 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적)

목표	이행 상황
(예시) 1. 사회적경제 관련기업 컨설팅(3월~10월) 2. 지역주민 대상 역량강화, 조직화 지원(5월)	(예시) 1. 몇 회 시행(3~6월, 월1회) - 내용(몇명, 무슨 활동 등) 2. 간담회 00회 시행(5월, 1회) 등 - 홍보활동 내용

2. 사업 주요 성과

* 실적에 따른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예시)

○ 농촌 지역주민 사회적경제 서비스 수요발굴 및 지원

-

-

○ 지역 주민의 공동체 구성·조직화 컨설팅 등 지원

-

-

3. 사업자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

4. 사업수요자(서비스수요자)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

5. 시·군 검토의견

(예시)

○(목표 달성을 위해 활동이 적절한지, 필요시 이용자에 맞게 활동이 적절히 개선되었는지)

○(예산 집행의 적절성)

○(기타: 지속가능성, 지역 문제 해결 기여도 등)

○(건의사항)

'23년도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 결과보고서

1. 예산 집행 실적

사업자명	사업비(천원)							사유 (미집행 시)	
	국비		지방비				총계		
	계획	실적	도 비		시군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00 시·군									

2. 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적)

목표	이행 상황
(예시) 1. 사회적경제 관련기업 컨설팅(3월~10월) 2. 지역주민 대상 역량강화, 조직화 지원(5월)	(예시) 1. 몇 회 시행(3~6월, 월1회) - 내용(몇명, 무슨 활동 등) 2. 간담회 00회 시행(5월, 1회) 등 - 홍보활동 내용

3. 사업 주요 성과

* 실적에 따른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 농촌 사회적경제 조직체 발굴 지원

-

○

-

-

'23년도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 평가보고서(시·도명)

1. 예산 집행 실적

사업자명	사업비(천원)							비 고	
	국비		지방비				총계		
	계획	실적	도 비		시군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시군명									
시군명									
시군명									

2. 사업 주요 성과

○

*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3. 시·도 평가 결과

○ 총평

○ (사업에 따른 영향 등)

4. 건의사항

○

[별지 제6호 서식] 평가지표

평가항목/배점		평가 등급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S	A	B	C	D	
1. 사업의 필요성 (20점)	○ 신청지역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사업의 필요성 (20점)	20	16	12	8	4	○ 사업필요성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가? ○ 사업의 필요성이 사업 범위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2. 사업추진 적합성 (70점)	○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20점)	20	16	12	8	4	○ 비전 및 사업목표가 명확한가? ○ 연차별 사업목표가 적절한가?
	○ 사업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30점)	30	24	18	12	6	○ 세부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세부계획이 구체적인가?
	○ 활동가 관리계획의 충실성 · 적절성(20점)	20	16	12	8	4	○ 활동가 선정 계획 및 관리방안이 구체적인가? ○ 지자체 지원 계획이 충실한가?
3. 예산계획의 적절성 (10점)	○ 예산편성의 적절성(10점)	10	8	6	4	2	○ 활동가의 체류비, 운영비 등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었는가?
가점사항	○ 인구소멸지역(10점)	10					○인구소멸지역 해당여부